

## 2026년 제2회 사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

사천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6호(2026.4.21.)에 따라 시행한 2026년 제2회 사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
사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최종합격자 명단

임용분야	임용직급	합격인원	응시번호	비고
일반행정	지방한시임기제 7호	1명	2026-02 박○○	

### 2 신규임용후보자 등록

가. 등록기간: 2026. 5. 22.(금) ~ 5. 26.(화)까지 (근무시간 내, 12~13시 제외)

나. 등록장소: 사천시의회사무국 3층 의정팀(☎055-831-3940)

다. 등록방법: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

라. 제출서류

- 기본증명서(상세)(주민등록번호 기재) 2통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기재) 1통
-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이 기록된 것) 1통
-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(「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)
-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3×4cm 2매, 5×7cm 1매
- 최종 학력증명서 1통
- 자격증(원본 지참)

### 3

### 기타사항

- 가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나.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사천시의회사무국 의정팀(☎055-831-3940)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합격자가 제출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##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### 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	
허리둘레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 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	좌: ( )
	우: ( )			우: ( )
종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 환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흉부 X선 검사		
기 타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	[ ]합 격	합격 사유	
합격 여부	[ ]판 정 보 류	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### 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  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  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# 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결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  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- 나.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 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
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    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